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7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178 처분부존재확인

원 고 A조합

피 고 ◯◯광역시 ◯◯구[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변 론 종 결 2023. 9. 8.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는 2023. 8. 16. 이 법원에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3. 8. 25.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상대방은 행정청인 ◯◯광역시 ◯◯구청장이 아닌 ◯◯광역시 ◯◯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 또한 당초 소장 제출 당시 ◯◯광역시 ◯◯구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하 원고가 ◯◯광역시 ◯◯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7

피고는 원고에게 4,685,866,330원 및 그중 2,044,148,620원[2]에 대하여는 2012. 8. 6. 부터, 9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30.부터, 622,299,400원에 대하여는 2013. 2. 26. 부터, 1,099,418,310원에 대하여는 2013. 4. 30.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경위

1) 원고는 1993. 9.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1993. 10. 19.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2) ○○○○공사(현재는 '○○○○○○공사'이다. 이하 '○○라 한다)는 ○○ ·○○경제자유구역 내 ○○ ○○구 B 일원에 있는 C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위 지구 내 유통시설용지 중 상류시설용지의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광역시에 위 상류시설용지 중 기계공구단지에 관한 분양추천 신청을 하여 2007. 11. 22. ○○광역시로부터 분양추천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3) 원고는 2007. 12. 6. ○○와 ○○ ○○구 D 대 101,250㎡(계약 당시 가분할 면적은 105,970㎡이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되, 매매대금 65,383,490,000원은 3년간 6회(계약보증금 별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 ○○구 E 대 51,877.7㎡(계약 당시 가분할 면적은 51,981㎡이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이 사건 제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2) 원고는 2022. 8.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원고가 2012. 8. 6. 2,044,148,520원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갑 제1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2,044,148,620원의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7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되, 매매대금 32,713,730,000원은 3년간 6회(계약보증금 별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할부금을 지급하다가 2010. 12. 30. 이 사건 제1 토지의 매매대금 합계 64,416,257,380원(면적 정산한 원금 63,025,007,500원에 지연손해금 1,391,249,880원을 가산)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1. 6. 7. 이 사건 제2 토지의 매매대금 합계 37,428,647,450원(면적 정산한 원금 32,807,627,550원에 지연손해금 4,621,019,900원을 가산)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2. 3. 19.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취득세의 면제 및 면제받은 취득세의 자진납부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할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0조 제5항 제2호 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각 할부금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C단지 입주조합협의회는 2011. 3. 10.과 2011. 3. 15. ○○광역시에 건축공사 준공 후 조합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조합원 명의로 분할 등기를 할 경우 조합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광역시는 2011. 3. 18. 위와 같은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고 회신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7

3) 원고는 원고의 개별 조합원들과 주식회사 F 등에게, 2012. 4. 6. 이후 무렵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매매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2012. 7. 4.부터 2012. 7. 23.까지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2010. 12. 30. 매매, 2011. 5. 30. 매매, 2011. 5. 31. 매매, 2012. 6. 22. 매매, 2011. 9. 20. 매매 등으로 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4) 원고는 ○○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2012. 4. 25.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2,964,148,620원을 자진 신고하여 2012. 8. 6. 2,044,148,620원을, 2013. 4. 30. 나머지 920,000,000원을 각 납부하고, 2012. 7. 12.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1,721,717,710원을 자진 신고하여 2013. 2. 26. 622,299,400원을, 2013. 4. 30. 나머지 1,099,418,310원을 각 납부(이하 원고가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다.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와 이 사건 각 거부처분

원고는 2015. 3. 27. ○○구청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이고,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단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이하 '이 사건 추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구청장은 2015. 6. 1. 이를 거부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등

1) 원고는 2015. 7. 28. ○○구청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16. 4. 7. '원고는 이 사건 각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7

토지에 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조합원들 등에게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추징규정에 따른 추징의 요건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합23206 판결).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16. 9. 30.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한 행위는 이 사건 추징규정 중 제2호의 추징요건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누20913 판결).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차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2. 23.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17. 2. 23. 선고 2016두55674 판결, 이하 위 소송들을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하고, 그에 대한 판결을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7. 3. 23. 부산고등법원에 위 2)항 기재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이하 '이 사건 재심의 소'라 한다)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7. 10. 1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7. 11. 3.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7. 10. 11. 선고 2017재누2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 을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7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징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 합계 4,685,866,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구청장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추징규정 중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단서 전단을 근거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과 이 사건 추징규정 중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는 위 처분의 근거와 무관한 과세요건, 즉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징세권)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구청장이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다투지 않은 당초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과세요건에 따른 납세의무(징세권)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더 이상 ○○구청장의 징세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2) 그리고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은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7조 제2호는 '위 38조에 따라 부과되지 아니한 지방세의 납부의무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청장은 이 사건 관련 판결의 확정일 이후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위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인정한 과세요건에 따른 납세의무(징세권) 또한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7

1) 이 사건 취득세 등 반환 사유의 부존재 주장

가) ○○구청장의 당초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 인정한 과세요건 또한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 소송인 이 사건 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 이외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으므로, ○○구청장이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과세요건이나 근거 법령을 추가하여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 판결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처분사실이 없는 납세의무에 관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확정된 소송물인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선결문제가 되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소에서 전소인 이 사건 관련 판결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없다.

다) 그리고 구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만을 의미하고, 이 사건 관련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납세의무가 구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등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소멸시효의 완성 항변

설령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의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사건 취득세 등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7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4953 판결 등 참조),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으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참조).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거부처분사유는 부과처분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7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385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제1항 기재 기초사실,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각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구청장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징수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구청장은 원고가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구청장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로 이 사건 추징규정을 밝혔고, ○○구청장이 제시한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도 원고가 위 규정 중 이 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7

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사건 추징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단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해당한다.

②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인 이 사건 각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확정된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소송물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객관적 존부라 할 것이다. 그리고 확정된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처분사유가 이 사건 추징규정 중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 등이었다가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는 위 규정 중 제2호에 대하여만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1호, 제2호의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사유의 추가가 가능하고, ○○구청장이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관련 판결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처분사실이 없는 납세의무에 관한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관련 판결로 인하여 위 제1호 사유에 기한 납세의무만 소멸하여 ○○구청장이 위 제2호 사유에 기한 처분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한다. 따라서 전소에 대한 확정된 관련 판결의 소송물인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객관적 존부에 관한 판단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선결문제가 되므로 이 사건 소에서 관련 판결의 판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7

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없다.

④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은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구청장에게 2012. 4. 25.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2012. 7. 12.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였다. 이러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등 참조).

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및 매각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추징규정이 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설령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 납부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신고,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피고의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설령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더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7

도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원고가 2012. 8. 6.부터 2013. 4. 30.까지 ○○구청장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 합계 4,685,866,330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강서구청장은 2015. 6. 1.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2. 23.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7. 3. 23. 부산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7. 10. 1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7. 11. 3.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재심의 소가 확정된 2017. 11. 3. 경부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3. 2. 22.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23. 8. 16.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7

판사 정○○

판사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7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7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2.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50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7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⑥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제226조의2(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① 법 제280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각 목의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법 제7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